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4. 1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8. 4. 4. 김윤정 의원 외 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8. 4. 5.
- 다. 상정일자 : 제21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8.4.13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윤정 의원

가. 제안이유

우리구 청년의 능동적인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청년 정책추진 환경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 : 안 제4조
- 2)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: 안 제8조
- 3) 참여확대, 능력개발, 고용확대, 주거안정 지원 등 : 안 제9~13조
- 4) 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, 청년단체 지원 : 안 제16조, 안 제18조

3. 검토보고 (이주현 전문위원)

- 청년실업 증가와 심각한 청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현상을 고려할 때 청년의 고용확대, 능력개발, 참여확대, 권리보호 등 청년의 기본적인 지원과 시책을 담고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
- 금번 발의된 제정 조례안은 “청년 고용촉진 특별법”에 일부 위임 근거가 있고 청년복지가 지방자치 고유사무라고 판단되는 것은 물론 조문구성 체계 등을 볼 때 문제가 없다 하겠음.
또한, 조례 제정·공포후 기본계획의 수립과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성 확보를 위해 부칙에 “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고 명문화 하였음.
- 한편,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, 중앙정부가 “청년일자리 대책”을 위한 2조9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서울 특별시 12개 타 자치구는 물론 지방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미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·공포한 사례가 있음.
-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, 김윤정 의원 외 복지도시위원회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”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